

May 15, 2014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개정 내용

– 법정 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매출액 3% 과징금 부과 등

지난 5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상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및 손해배상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1. 인과관계 입증 없이도 매출액 3% 이내의 과징금 부과 가능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과 유출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만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유출시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조치(법 제28조 제1항 2호 내지 5호)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와 유출 사고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없이도 관련 매출액의 3%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법 제64조의3 제1항 개정). 또한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등 각종 개인정보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제재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 유출기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정보통신망법상 요구되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미비할 경우 이는 정보유출사고시 곧바로 거액의 과징금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정보유출사고시 과징금을 면하기 위해 사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제도 도입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액의 입증 없이도 최대 3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법 제32조의2 신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사업자가 동법 제4장(개인정보의 보호)을 위반하였다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피해자는 자신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최고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례를 보면, 피해자들에게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위자료 명목의 20만 원 안팎이 대부분이고, 그나마도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피해자의 경우 어느 정도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인정된 손해액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즉,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직접 손해 규모를 증명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배상기준이 없는데다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액 입증이 어렵다 보니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자 구제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청구 자체가 어렵다 보니 기업들도 개인정보 보호에 소극적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해 법정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면서 피해자들의 구제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이고, 향후 유사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도 상향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정보통신서비스를 폭넓게 이용하고 있어 기업들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만큼, 기업 스스로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한층 강화하는 동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스팸 메일 차단을 위한 제도 보완

종전의 경우 휴대전화 문자와는 달리 이메일·홈페이지 게시판 등은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아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이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모든 전자적 전송매체에 대하여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에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사전 동의를 받았더라도 수신자가 이를 철회하거나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면 전송을 금지해야 합니다(법 제50조 개정).

‘스팸’ 메일은 일방적·대량적으로 전달되는 우편으로서 무차별적으로 살포되어 이용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되는 요인이고, 나아가 최근에는 바이러스 살포 등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제 강화는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매우 실효성 있는 조치라 생각합니다.

4. 개인정보 사고시 2차 피해 예방 및 사전 유출 방지 조치 강화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이용자에게 알리고(법 제27조의3제1항 개정 및 제2, 3항 신설),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복구·재생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해 2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법 제29조 제1항 개정).

개인정보 파기시 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이미 개인정보보호법에 있는 내용(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제2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과는 달리 위 규정을 지키지 않을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법 제73조 제1호의2 신설). 기업 입장에서는 위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적시에 적절한 방법으로 파기하는 정책적·기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필요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 제공 강요 금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민감정보의 경우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집할 수 있더라도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하여야 하고(법 제23조 제1항), ‘필요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금지됩니다(법 제23조 제2항). 여기에 이번 개정안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의 의미를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하여 보다 상세히 기준을 설정해 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법 제23조 제3항).

이는 업계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정보제공 동의절차가 과도한 정보수집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고, 기업의 불필요한 정보 보유로 인해 정보유출사고의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까지 서비스 이용의 조건으로 삼을 수 없고, 제공할 정보 중 필수·선택항목이 별도로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선택항목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반드시 고지되어야 하는 등 개정안에 따른 수집방법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및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유출사고에 대한 대응은 물론이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한층 강화되면서, 기업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할 것입니다. 위 개정법은 11월 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개정안의 요지와 의의를 고려하시어 이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보호정책 수립 및 시스템 구축 등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보보호 전문그룹 소개〉

최근 개인정보의 유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사후 대응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개인정보보호팀은 정보보호 관련 규제 및 법령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실무 경험은 물론 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인 전문성까지 보유함으로써 정보보호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정비 및 정보처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종합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 유출 사고 발생에 따른 민·형사소송에서도 탁월한 업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가로 활약하여 온 윤종수 前 부장판사를 영입하여 전문팀의 역량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윤 변호사는 지난 21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각 위원, 인터넷 검색 서비스발전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윤종수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040 | E-Mail. jsyoon@shinkim.com |
| ● 강현정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080 | E-Mail. hjkang@shinkim.com |